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254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202545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30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이상호

변론종결 2022. 5. 27.

판결선고 2022. 7. 22.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308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38,289,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8,289,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그 범위에서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3~4행 및 그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B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2. 3. 무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38,289,3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	본세	가산금 및 증가산금	합계
① 고지일자 2018. 9. 10.	14,765,700원	9,136,190원	23,901,890원
② 고지일자 2018. 11. 9.	161,648,490원	52,738,990원	214,387,480원
합계	176,414,190원	61,875,180원	238,289,370원

○ 제3면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한다.

○ 제3면 표 아래 제5, 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P가 ① 2019. 4. 24. 주식회사 G으로부터 B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정보를, ② 2019. 4. 24. 및 2019. 5. 29. 주식회사 H으로부터 B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교환내역에 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제8면 표 아래 제2행의 “L건물”을 “Q빌라[갑 제11호증(채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지번 등을 특정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8면 표 아래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제8면 각주 2) 제1행의 “갑 제12(14면)”을 “갑 제12호증(14면)”으로 고친다. ○ 제9면 제1~3행의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를 “피고는 B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를 분양받을 당시 그 계약금 상당액을 B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에게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 대여하였다고”로 고친다.

○ 제9면 제5~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와 B이 부녀지간인 점을 감안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대여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피고가 B에게 정산을 요구하거나 변제독촉을 하는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서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③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을 송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가 B의 금전 관리를 위해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B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거나 피고의 용인 아래 B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어 왔다는 등 B이 송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 제10면 제15, 17행의 각 “218,442,870원”을 “238,289,370원”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

별지